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면 시 고려사항 추가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3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면 시 고려사항 추가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30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소규모·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를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Ⅲ. 검토의견

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면 시 고려사항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에 있어 현행법상 고려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를 및 노무제공 형태 등에 더하여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의 수를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감면 대상과 감면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⑥ (생략) ⑦ <u>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를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u>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사업주의 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의 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u> -----

⑧ ~ ⑬ (생략)	----- ----- ----- ----- ----- ----- ⑧ ~ ⑬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제48조의6제1항에서 「산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하면서, 동조제7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1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료를 면제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를 감경하고, 그 감경 비율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21조제1항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재산과 소득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용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도 고려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48조의6에 규정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에 있어서는 사업 규모가 고려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의 수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면 시 고려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영세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및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의의가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감면 대상 기준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과 고시를 통하여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과 같이 사업주의 소득과 사업장별 노무제공자의 수를 추가로 고려하게 되는 경우 영세사업장의 부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